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(BT-IT 융합센터 건립공사)

□ 점검일시 : 2021.06.16 (수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한종수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사다리는 가능한 통로용으로만 사용하기 바람
며, 부득이하게 작업 시 2인1조로 작업할 수 있
도록 교육하고,

- 아웃트리거가 없는 사다리는 보완하거나 공사
장 밖으로 반출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5(사다리A형)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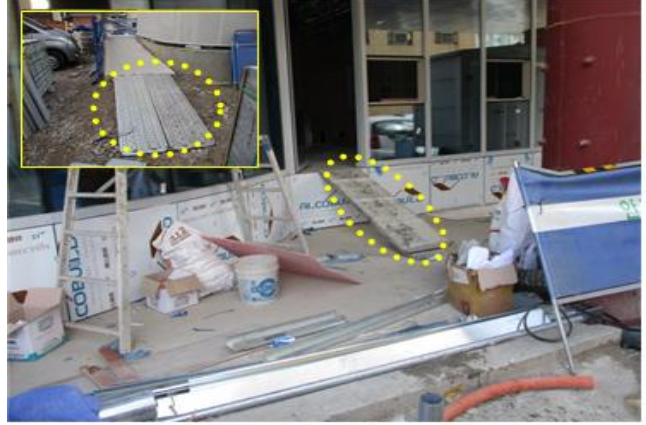
- 옥상으로 나가는 계단실은 난간 작업 준비 중
으로 난간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추락방지시설
이 없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근로자 외 출입금
지 시키기 바람,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방지
대책을 강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
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(가설경사로)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현장에 설치된 분전반은 인입등이 없어 수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인입등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.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6(분전반)



○ 기계기구 안전(건축부)

- 현장에서 사용중인 콤푸레서는 회전축을 덮는 덮개가 없으니 설치 후 사용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)



○ 기계기구 안전(건축부)

- 목재가공용 동근톱은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,
 - ① 톱날접촉예방장치 설치
 - ② 반발예방장치 설치
 - ③ 비상정지장치 설치
 - ④ 위험표지판 설치 및 소화기 비치
- 그라인더는 덮개를 설치하고 정기점검(매월)



)을 실시하여 그 표지를 부착 관리하기 바람.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7(동근톱), 28(위험기계·기구 안전검사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용접작업 시 보안경 등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, 불꽃비산방지 및 소화기를 비치하기 바람, 작업이 끝난 후 홀더에서 용접봉을 분리 후 보관하기 바람.
 - 또한 고속절단기는 작업 시 불꽃비산 방지시설 및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교육하기 바람.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1(용접작업 및 용접기), 26(고속절단기)



